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4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황 희 · 이훈기 · 한민수
최기상 · 이소영 · 한정애
손명수 · 김태년 · 박수현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관리인을”을 “관리인 1인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한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서 해임된 때
3. 제5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서 관리인이 해임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u>관리인</u> 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 ----- ----- ----- <u>관리인 1인</u> 을-----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한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해임된 때
	3. 제5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서 관리인이 해임된 때